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3일, 서미화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의원)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자원봉사자가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신고·삭제 요청하고, 자살동반자 모집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소방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 체계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체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살유발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그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의 중간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체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이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의 협조를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

바, 자살유발정보의 삭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이러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는 모니터링센터의 장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협조 요청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고 있고 해당 자살유발정보를 유통시킨 자를 위한 권리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개정안의 태도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이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가 수행하게 되지만 동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재단과 센터의 관계가 불명확함. 즉 센터가 재단과 다른 별도의 조직으로서 단지 장소적 공동이용관계인지 아니면 재단 소속의 한 부서가 되는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업무를 국가사무로 명확히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업무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조문 구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